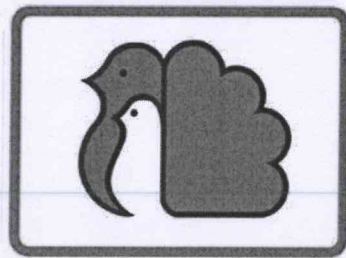


동탄2신도시 A70,A71,A72블록

「사랑으로」 부영 입주자모집공고



사랑으로

(주)부영주택



동탄2신도시 A70,A71,A72블록 「사랑으로」 부영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5.12.29. 전부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8.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이며,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5.08.1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16.02.10.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화성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96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최저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공급신청자나 공급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고령자 및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사이에 경쟁이있으면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5.02.27.)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 1,2,3순위 ’ 방식을 → ‘ 1,2순위 ’ 방식으로 간소화 되며,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 2년, 24회 납입 ’ 을 → ‘ 1년, 12회 납입 ’ 으로 변경됩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완화: 기존 ‘ 무주택세대주 ’ 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 1명 신청)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 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자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 60㎡ 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 에서 → ‘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 ’ 로 변경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6.09.02)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당첨자는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면적 85㎡초과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 무순위 또는 선택순 분양주택 제외)의 재당첨이 제한됩니다.(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에 해당)
 - 단,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http://dongtan2hosu.booyoung.co.kr>)를 운영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당사 홈페이지(<http://dongtan2hosu.booyoung.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주택과(2016.08.05) - 4841호(A70블록), 4843호(A71블록), 4845호(A72블록)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70,A71,A72블록
- 공급규모
 - **A70블록**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15-28층 7개동 총 6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00세대포함(기관추천특별공급 61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61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7세대 포함)]
 - **A71블록**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15-25층 6개동 총 5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03세대포함(기관추천특별공급 2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49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2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0세대 포함)]
 - **A72블록**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3층, 지상15-27층 8개동 총 70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41세대포함(기관추천특별공급 29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66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29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7세대 포함)]
- 공급대상
 - **A70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 주택	2016000000-01	59.9912	59.9912	23.3183	83.3095	38.3770	121.6865	43.2260	30	30	30	9	99	208	307	10
	2016000000-02	60.3768	60.3768	23.4296	83.8064	41.8268	125.6332	43.5038	11	11	11	3	36	82	118	7
	2016000000-03	84.5200A	84.5200	25.4139	109.9339	53.3763	163.3102	60.8999	10	10	10	3	33	75	108	4
	2016000000-04	84.5442B	84.5442	25.2579	109.8021	53.3915	163.1936	60.9174	5	5	5	1	16	38	54	2
	2016000000-05	84.5413C	84.5413	25.2602	109.8015	53.3896	163.1911	60.9153	5	5	5	1	16	38	54	2

• A71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 주택	2016000000-01	84.5200A	84.5200	25.5891	110.1091	53.9090	164.0181	58.3569	11	11	11	3	36	79	115	5
	2016000000-02	84.5442B	84.5442	25.4333	109.9775	53.9244	163.9019	58.3736	6	6	6	1	19	46	65	3
	2016000000-03	84.5413C	84.5413	25.4355	109.9768	53.9225	163.8993	58.3716	5	5	5	1	16	34	50	2
	2016000000-04	88.4828A	88.4828	25.5689	114.0517	56.2653	170.3170	61.0930	0	11	0	3	14	101	115	5
	2016000000-05	88.0279B	88.0279	25.3379	113.3658	55.9757	169.3415	60.7790	0	5	0	1	6	44	50	2
	2016000000-06	88.0250C	88.0250	25.3402	113.3652	55.9739	169.3391	60.7770	0	6	0	1	7	58	65	3
	2016000000-07	134.8169A	134.8169	26.2908	161.1077	89.3317	250.4394	93.0845	0	3	0	0	3	27	30	2
	2016000000-08	134.9413B	134.9413	27.0267	161.9680	89.4140	251.3820	93.1704	0	1	0	0	1	14	15	1
	2016000000-09	134.9668C	134.9668	27.0046	161.9714	89.4308	251.4022	93.1880	0	1	0	0	1	14	15	1

• A72블록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 주택	2016000000-01	84.5200A	84.5200	25.7645	110.2845	55.1371	165.4216	57.5562	15	15	15	4	49	106	155	5
	2016000000-02	84.5442B	84.5442	25.6087	110.1529	55.1529	165.3058	57.5726	8	8	8	2	26	63	89	4
	2016000000-03	84.5413C	84.5413	25.6109	110.1522	54.1510	165.3032	57.5707	6	6	6	2	20	49	69	3
	2016000000-04	88.4828A	88.4828	25.7075	114.1903	57.6460	171.8363	60.2547	0	15	0	4	19	133	152	6
	2016000000-05	88.0279B	88.0279	25.4759	113.5038	57.3494	170.8532	59.9450	0	6	0	2	8	61	69	3
	2016000000-06	88.0250C	88.0250	25.4782	113.5032	57.3476	170.8508	59.9430	0	8	0	2	10	74	84	4
	2016000000-07	134.8169A	134.8169	26.6155	161.4324	86.5844	248.0168	91.8072	0	4	0	1	5	38	43	1
	2016000000-08	134.9413B	134.9413	27.3518	162.2931	86.6644	248.9575	91.8919	0	2	0	0	2	18	20	1
	2016000000-09	134.9668C	134.9668	27.3297	162.2965	86.6808	248.9773	91.9093	0	2	0	0	2	23	25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A70블록

(단위 :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15%) 2017.01.30	2회(15%) 2017.06.30	3회(15%) 2017.11.30	4회(15%) 2018.04.30	
59	기준층	262	113,161,589	179,938,411	293,100,000	29,310,000	43,965,000	43,965,000	43,965,000	43,965,000	87,930,000
	4층	12	113,161,589	176,838,411	290,000,000	29,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87,000,000
	3층	12	113,161,589	173,838,411	287,000,000	28,70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86,100,000
	2층	11	113,161,589	170,838,411	284,000,000	28,4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85,200,000
	1층	10	113,161,589	164,838,411	278,000,000	27,8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60	기준층	88	113,888,843	179,211,157	293,100,000	29,310,000	43,965,000	43,965,000	43,965,000	43,965,000	87,930,000
	4층	8	113,888,843	176,111,157	290,000,000	29,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87,000,000
	3층	8	113,888,843	173,111,157	287,000,000	28,70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43,050,000	86,100,000
	2층	7	113,888,843	170,111,157	284,000,000	28,4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85,200,000
	1층	7	113,888,843	164,111,157	278,000,000	27,8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84A	기준층	92	159,430,192	225,269,808	384,700,000	38,470,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115,410,000
	4층	4	159,430,192	220,569,808	380,000,000	38,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3층	4	159,430,192	217,569,808	377,000,000	37,70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113,100,000
	2층	4	159,430,192	213,569,808	373,000,000	37,30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111,900,000
	1층	4	159,430,192	205,569,808	365,000,000	36,50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09,500,000
84B	기준층	46	159,476,005	225,223,995	384,700,000	38,470,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115,410,000
	4층	2	159,476,005	220,523,995	380,000,000	38,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3층	2	159,476,005	217,523,995	377,000,000	37,70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113,100,000
	2층	2	159,476,005	213,523,995	373,000,000	37,30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111,900,000
	1층	2	159,476,005	205,523,995	365,000,000	36,50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09,500,000
84C	기준층	46	159,470,507	225,229,493	384,700,000	38,470,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57,705,000	115,410,000
	4층	2	159,470,507	220,529,493	380,000,000	38,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14,000,000
	3층	2	159,470,507	217,529,493	377,000,000	37,70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113,100,000
	2층	2	159,470,507	213,529,493	373,000,000	37,30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55,950,000	111,900,000
	1층	2	159,470,507	205,529,493	365,000,000	36,50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09,500,000

• A71블록

(단위 :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15%) 2017.01.30	2회(15%) 2017.06.30	3회(15%) 2017.11.30	4회(15%) 2018.04.30	
84A	기준층	95	164,648,105	233,851,895	398,500,000	39,850,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119,550,000
	4층	5	164,648,105	229,351,895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5	164,648,105	225,351,895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5	164,648,105	221,351,895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5	164,648,105	213,351,895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4B	기준층	53	164,695,222	233,804,778	398,500,000	39,850,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119,550,000
	4층	3	164,695,222	229,304,778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3	164,695,222	225,304,778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3	164,695,222	221,304,778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3	164,695,222	213,304,778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4C	기준층	42	164,689,579	233,810,421	398,500,000	39,850,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59,775,000	119,550,000
	4층	2	164,689,579	229,310,421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2	164,689,579	225,310,421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2	164,689,579	221,310,421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2	164,689,579	213,310,421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8A	기준층	95	172,367,735	246,632,265	419,000,000	41,90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125,700,000
	4층	5	172,367,735	241,632,265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5	172,367,735	237,632,265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5	172,367,735	233,632,265	406,000,000	40,6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층	5	172,367,735	225,632,265	398,000,000	39,8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88B	기준층	42	171,481,815	247,518,185	419,000,000	41,90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125,700,000



	4층	2	171,481,815	242,518,185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2	171,481,815	238,518,185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2	171,481,815	234,518,185	406,000,000	40,6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층	2	171,481,815	226,518,185	398,000,000	39,8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88C	기준층	53	171,476,173	247,523,827	419,000,000	41,90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62,850,000	125,700,000
	4층	3	171,476,173	242,523,827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3	171,476,173	238,523,827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3	171,476,173	234,523,827	406,000,000	40,6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21,800,000
	1층	3	171,476,173	226,523,827	398,000,000	39,8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134A	기준층	22	262,628,524	312,371,476	575,000,000	57,50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172,500,000
	4층	2	262,628,524	306,371,476	569,000,000	56,90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170,700,000
	3층	2	262,628,524	300,371,476	563,000,000	56,30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168,900,000
	2층	2	262,628,524	294,371,476	557,000,000	55,70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167,100,000
	1층	2	262,628,524	288,371,476	546,000,000	54,6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163,800,000
134B	기준층	11	262,870,882	312,129,118	575,000,000	57,50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172,500,000
	4층	1	262,870,882	306,129,118	569,000,000	56,90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170,700,000
	3층	1	262,870,882	300,129,118	563,000,000	56,30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168,900,000
	2층	1	262,870,882	294,129,118	557,000,000	55,70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167,100,000
	1층	1	262,870,882	288,129,118	546,000,000	54,6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163,800,000
134C	기준층	11	262,920,539	312,079,461	575,000,000	57,50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86,250,000	172,500,000
	4층	1	262,920,539	306,079,461	569,000,000	56,90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85,350,000	170,700,000
	3층	1	262,920,539	300,079,461	563,000,000	56,30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84,450,000	168,900,000
	2층	1	262,920,539	294,079,461	557,000,000	55,70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83,550,000	167,100,000
	1층	1	262,920,539	288,079,461	546,000,000	54,6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81,900,000	163,800,000

• A7블록

(단위 : 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15%) 2017.01.30	2회(15%) 2017.06.30	3회(15%) 2017.11.30	4회(15%) 2018.04.30	
84A	기준층	130	162,700,391	235,599,609	398,300,000	39,830,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119,490,000
	4층	7	162,700,391	231,299,609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7	162,700,391	227,299,609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6	162,700,391	223,299,609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5	162,700,391	215,299,609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4B	기준층	73	162,746,750	235,553,250	398,300,000	39,830,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119,490,000
	4층	4	162,746,750	231,253,250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4	162,746,750	227,253,250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4	162,746,750	223,253,250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4	162,746,750	215,253,250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4C	기준층	57	162,741,379	235,558,621	398,300,000	39,830,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59,745,000	119,490,000
	4층	3	162,741,379	231,258,621	394,000,000	39,4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59,100,000	118,200,000
	3층	3	162,741,379	227,258,621	390,000,000	39,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17,000,000
	2층	3	162,741,379	223,258,621	386,000,000	38,6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15,800,000
	1층	3	162,741,379	215,258,621	378,000,000	37,8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13,400,000
88A	기준층	125	170,328,535	248,171,465	418,500,000	41,850,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125,550,000
	4층	7	170,328,535	243,671,465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7	170,328,535	239,671,465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7	170,328,535	234,671,465	405,000,000	40,50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121,500,000
	1층	6	170,328,535	226,671,465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88B	기준층	57	169,453,072	249,046,928	418,500,000	41,850,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125,550,000
	4층	3	169,453,072	244,546,928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3	169,453,072	240,546,928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3	169,453,072	235,546,928	405,000,000	40,50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121,500,000
	1층	3	169,453,072	227,546,928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88C	기준층	68	169,447,419	249,052,581	418,500,000	41,850,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62,775,000	125,550,000
	4층	4	169,447,419	244,552,581	414,000,000	41,4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3층	4	169,447,419	240,552,581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4	169,447,419	235,552,581	405,000,000	40,50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121,500,000
	1층	4	169,447,419	227,552,581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134A	기준층	37	259,521,430	313,478,570	573,000,000	57,30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171,900,000
	4층	2	259,521,430	307,478,570	567,000,000	56,7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3층	2	259,521,430	301,478,570	561,000,000	56,10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168,300,000
	2층	1	259,521,430	295,478,570	555,000,000	55,50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166,500,000
	1층	1	259,521,430	284,478,570	544,000,000	54,4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134B	기준층	16	259,760,861	313,239,139	573,000,000	57,30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171,900,000
	4층	1	259,760,861	307,239,139	567,000,000	56,7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3층	1	259,760,861	301,239,139	561,000,000	56,10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168,300,000
	2층	1	259,760,861	295,239,139	555,000,000	55,50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166,500,000
	1층	1	259,760,861	284,239,139	544,000,000	54,4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134C	기준층	21	259,810,047	313,189,953	573,000,000	57,30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171,900,000
	4층	1	259,810,047	307,189,953	567,000,000	56,7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3층	1	259,810,047	301,189,953	561,000,000	56,10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168,300,000
	2층	1	259,810,047	295,189,953	555,000,000	55,50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166,500,000
	1층	1	259,810,047	284,189,953	544,000,000	54,4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 평방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편입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A7블록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912	60.3768	84.5200A	84.5442B	84.5413C
약식표기	59	60	84A	84B	84C

• A7블록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5200A	84.5442B	84.5413C	88.4828A	88.0279B	88.0250C	134.8169A	134.9413B	134.9668C
약식표기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 A7블록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5200A	84.5442B	84.5413C	88.4828A	88.0279B	88.0250C	134.8169A	134.9413B	134.9668C
약식표기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유의사항

- 2001.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면적은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등)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 계약시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당첨자 선정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유치원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관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기준으로 납부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리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월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자세한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상가** 아파트 동번호는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동번호 부여원칙’에 따라 동번호가 부여되므로, 향후 상가의 동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연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자녀·장애인가족·중소기업근로자·군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특별공급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 분		일 시	장 소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	2016. 08. 17(수) / 10:00~15:00	사랑으로 부영 동탄 건본 주택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번지 일원 (문의 : 1577-5533)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6. 08. 17(수) / 17:00	



※ 당첨자 선정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특별공급 입주자지축(청약자격 요건)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
 - 가.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나.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청약예금 지역·면적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가.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나.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 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1순위자
 -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 기준이 청약예금 지역·면적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1순위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 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여부 확인대상자: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상가 ‘공급신청자격자’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주의 형제·자매·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며느리·사위 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후 동시에 당첨시 모두 무효로 처리함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서약서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미성년인 자녀가 세명 이상인 자 중 주택공급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4. 계약체결일

- A70블록 : 2016.09.02.(금) ~ 2016.09.05.(월) [3일간 / 시간 : 10:00 ~ 17: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A71블록 : 2016.09.01.(목) ~ 2016.09.03.(토) [3일간 / 시간 : 10:00 ~ 17: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A72블록 : 2016.08.31.(수) ~ 2016.09.02.(금) [3일간 / 시간 : 10:00 ~ 17:00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 A70블록

(단위 : m², 세대)

구 분		59	60	84A	84B	8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30	11	10	5	5	61
다자녀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5	6	5	3	3	3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5	5	5	2	2	29
	소 계	30	11	10	5	5	61
신혼부부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9	4	3	2	2	20
	경기도 거주자(20%)	6	2	2	1	1	1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5	5	5	2	2	29
	소 계	30	11	10	5	5	6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3	1	1	1	1	7
	경기도 거주자(20%)	2	1	1	0	0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1	1	0	0	6
	소 계	9	3	3	1	1	17
합 계		99	36	33	16	16	200

• A71블록

(단위 : m², 세대)

구 분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11	6	5	0	0	0	0	0	0	22
다자녀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6	3	3	6	3	3	2	1	1	28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3	2	5	2	3	1	0	0	21
	소 계	11	6	5	11	5	6	3	1	1	49
신혼부부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4	2	2	0	0	0	0	0	0	8
	경기도 거주자(20%)	2	1	1	0	0	0	0	0	0	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5	3	2	0	0	0	0	0	0	10
	소 계	11	6	5	0	0	0	0	0	0	2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1	1	1	1	1	1	0	0	0	6
	경기도 거주자(20%)	1	0	0	1	0	0	0	0	0	2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	0	0	1	0	0	0	0	0	2



	소 계	3	1	1	3	1	1	0	0	0	10
	합 계	36	19	16	14	6	7	3	1	1	103

• A72블록

(단위 : m², 세대)

구 분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공공자 등	15	8	6	0	0	0	0	0	0	29
다자녀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8	4	3	8	3	4	2	1	1	3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7	4	3	7	3	4	2	1	1	32
	소 계	15	8	6	15	6	8	4	2	2	66
신혼부부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5	2	2	0	0	0	0	0	0	9
	경기도 거주자(20%)	3	2	1	0	0	0	0	0	0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7	4	3	0	0	0	0	0	0	14
	소 계	15	8	6	0	0	0	0	0	0	29
노부교부양특별공급	화성시 거주자(30%)	1	1	1	1	1	1	1	0	0	7
	경기도 거주자(20%)	1	1	1	1	1	1	0	0	0	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0	0	2	0	0	0	0	0	4
	소 계	4	2	2	4	2	2	1	0	0	17
합 계		49	26	20	19	8	10	5	2	2	141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A70블록 61세대, A71블록 22세대, A72블록 29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량 0% 이내)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	60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공공자 등	A70블록	30	11	10	5	5	0	0	0	0	0	0	61
		A71블록	0	0	11	6	5	0	0	0	0	0	0	22
		A72블록	0	0	15	8	6	0	0	0	0	0	0	29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공공자 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이주대책 대상자 중 1군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와 상관없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 가. 국가유공자 : 보훈청(복지과)
 - 나.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복지과)
 - 다.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청
 - 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복지정책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공급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A70블록 61세대, A71블록 49세대, A72블록 66세대 / 전체 주택건설량 10% 이내)



	3층	4	169,447,419	240,552,581	410,000,000	41,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23,000,000
	2층	4	169,447,419	235,552,581	405,000,000	40,50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60,750,000	121,500,000
	1층	4	169,447,419	227,552,581	397,000,000	39,70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59,550,000	119,100,000
134A	기존층	37	259,521,430	313,478,570	573,000,000	57,30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171,900,000
	4층	2	259,521,430	307,478,570	567,000,000	56,7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3층	2	259,521,430	301,478,570	561,000,000	56,10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168,300,000
	2층	1	259,521,430	295,478,570	555,000,000	55,50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166,500,000
	1층	1	259,521,430	284,478,570	544,000,000	54,4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134B	기존층	16	259,760,861	313,239,139	573,000,000	57,30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171,900,000
	4층	1	259,760,861	307,239,139	567,000,000	56,7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3층	1	259,760,861	301,239,139	561,000,000	56,10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168,300,000
	2층	1	259,760,861	295,239,139	555,000,000	55,50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166,500,000
	1층	1	259,760,861	284,239,139	544,000,000	54,4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134C	기존층	21	259,810,047	313,189,953	573,000,000	57,30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85,950,000	171,900,000
	4층	1	259,810,047	307,189,953	567,000,000	56,7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3층	1	259,810,047	301,189,953	561,000,000	56,10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84,150,000	168,300,000
	2층	1	259,810,047	295,189,953	555,000,000	55,50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83,250,000	166,500,000
	1층	1	259,810,047	284,189,953	544,000,000	54,4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81,600,000	163,200,000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A70블록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912	60.3768	84.5200A	84.5442B	84.5413C
약식표기	59	60	84A	84B	84C

• A71블록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5200A	84.5442B	84.5413C	88.4828A	88.0279B	88.0250C	134.8169A	134.9413B	134.9668C
약식표기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 A72블록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5200A	84.5442B	84.5413C	88.4828A	88.0279B	88.0250C	134.8169A	134.9413B	134.9668C
약식표기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면적은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동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등)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 제세공과금 등이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 계약시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당첨자 선정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관계법령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 C자녀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	60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C자녀 특별공급	A70블록	경기도 거주자(50%)	15	6	5	3	3	0	0	0	0	0	3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15	5	5	2	2	0	0	0	0	0	29
		계	30	11	10	5	5	0	0	0	0	0	61
	A71블록	경기도 거주자(50%)	0	0	6	3	3	6	3	3	2	1	28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5	3	2	5	2	3	1	0	21
		계	0	0	11	6	5	11	5	6	3	1	49
	A72블록	경기도 거주자(50%)	0	0	8	4	3	8	3	4	2	1	34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7	4	3	7	3	4	2	1	32
		계	0	0	15	8	6	15	6	8	4	2	66

• 신청자격

- 1.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
- 2. 가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원(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면 1인 1청약 가능함.
- 3. 1.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4. 1.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되며, 입양자녀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1.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5. 1.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1.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선정자 선정방법

- 1. 1.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시 다 시·도에 배정함)
- 2. 1.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가.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나.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3. 1.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접수기재)

평가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사항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인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거주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거주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대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거주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A70블록 61세대, A71블록 22세대, A72블록 29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	60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A70블록	화성시 거주자(30%)	9	4	3	2	2	0	0	0	0	0	20
		경기도 거주자(20%)	6	2	2	1	1	0	0	0	0	0	1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15	5	5	2	2	0	0	0	0	0	29
		계	30	11	10	5	5	0	0	0	0	0	61
	A71블록	화성시 거주자(30%)	0	0	4	2	2	0	0	0	0	0	8
		경기도 거주자(20%)	0	0	2	1	1	0	0	0	0	0	4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5	3	2	0	0	0	0	0	10
		계	0	0	11	6	5	0	0	0	0	0	22
	A72블록	화성시 거주자(30%)	0	0	5	2	2	0	0	0	0	0	9
		경기도 거주자(20%)	0	0	3	2	1	0	0	0	0	0	6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7	4	3	0	0	0	0	0	14
		계	0	0	15	8	6	0	0	0	0	0	29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4원 이하	6,570,483원 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하여야 함.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 ※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가산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가. 제1순위 : 혼인가산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나. 제2순위 : 혼인가산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배분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함.

• 신혼부부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전직자 및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A70블록 17세대, A71블록 10세대, A72블록 17세대 / 전체 주택건설량 3% 이내)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59	60	84A	84B	84C	88A	88B	88C	134A	134B	134C	합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A70블록	화성시 거주자(30%)	3	1	1	1	1	0	0	0	0	0	0	7
		경기도 거주자(20%)	2	1	1	0	0	0	0	0	0	0	0	4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1	1	0	0	0	0	0	0	0	0	6
		계	9	3	3	1	1	0	0	0	0	0	0	17
	A71블록	화성시 거주자(30%)	0	0	1	1	1	1	1	1	0	0	0	6
		경기도 거주자(20%)	0	0	1	0	0	1	0	0	0	0	0	2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1	0	0	1	0	0	0	0	0	2
		계	0	0	3	1	1	3	1	1	0	0	0	10
	A72블록	화성시 거주자(30%)	0	0	1	1	1	1	1	1	1	0	0	7
		경기도 거주자(20%)	0	0	1	1	1	1	1	1	0	0	0	6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0	0	2	0	0	2	0	0	0	0	0	4
		계	0	0	4	2	2	4	2	2	1	0	0	17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특별공급 신청기간 내 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인터넷뱅킹 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 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구.하나은행, 구.외환은행),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포함]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관리되며 재사용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고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12.29.)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든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자격요건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적용, 추첨제 6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이상인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규모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면적으로 선택하여야함) (4)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정제로 접수함. 가정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용면적 85㎡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지역별·면적별)에 따른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2순위	전주택형	- 추첨제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청약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1) 공통

- 총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화성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당해지역 거주자”), 경기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경기도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전원 청약순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청약순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당해지역(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수도권 거주자 접수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 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차순위 공급세대 배분방식 및 공급순서 또한 선순위와 동일함)
-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2) 1순위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정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접수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정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정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 적용)
-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4) 청약자격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자격 기재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정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정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경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함.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 가정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정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미만 미혼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7년 이상~8년 미만	16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0명(가입자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3명	20		-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총 점	84	7년 이상~8년 미만	9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정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자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단, 2007.0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검증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일반공급의 경우이며,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아래의 가. 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나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05.0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해야 인정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2015.0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기 청약자격 전산수색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색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요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1,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함.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자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 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점 창구 신청접수

구 분	금 액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전주택형	100만원	거래은행 창구 청약자	가능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자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KEB하나(구.하나은행, 구.외환은행),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해야 함. (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A70블록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6.08.30(화)]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A71블록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6.08.29(월)]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A72블록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6.08.26(금)]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 분	비 고
거래은행 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자동환불 미신청자 청구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본인확인증표(※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동일),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 은행창구 청약신청시와 동일),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3.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A70블록 □A71블록 □A72블록 공통)

구 분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화성시 / 경기도	2016.08.17.(수) 10:00~15:00	견본주택 방문접수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방교리 29-1번지 일원 (문의전화 : 1877-5510)
일반공급	1순위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2016.08.18.(목) 08:00~17:30	인터넷신청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2순위		2016.08.19.(금) 08:00~17:30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지점 창구에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순위)확인서	본인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월거주택 소유자,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 (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및 추천명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이혼/재혼한 경우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재직증명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며, 만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필요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세대원	□접수 장소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구성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각각 필요(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대리신청시(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도장	대리인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8.1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 ※ 상기서류 외에 적격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계약 체결
A70블럭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시 : 2016.08.17.(수) 17: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시 : 2016.08.29.(월) □확인방법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 당사 홈페이지(http://dangtan2hosuboyoung.co.kr)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일시 : 2016.09.02.(금)~2016.09.05.(월) (3일간, 10:00~16: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일시 : 2016.08.29.(월)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A71블럭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시 : 2016.08.17.(수) 17: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시 : 2016.08.26.(금) □확인방법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 당사 홈페이지(http://dangtan2hosuboyoung.co.kr)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일시 : 2016.09.01.(목)~2016.09.03.(토) (3일간, 10:00~16: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일시 : 2016.08.26.(금)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A72블럭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시 : 2016.08.17.(수) 17: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시 : 2016.08.25.(목) □확인방법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 당사 홈페이지(http://dangtan2hosuboyoung.co.kr)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일시 : 2016.08.31.(수)~2016.09.02.(금) (3일간, 10:00~16:00)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일시 : 2016.08.25.(목) □장소 : 사랑으로 부영 동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 ※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서비스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당첨자 발표일 부터 10일간 제공됨)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APT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 A70블록 : 2016.08.29. ~ 2016.09.07.(10일간) • A71블록 : 2016.08.26. ~ 2016.09.04.(10일간) • A72블록 : 2016.08.25. ~ 2016.09.03.(10일간)	
전화(ARS)	이용방법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 전화 1369(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 A70블록 : 2016.08.29. ~ 2016.09.07.(10일간) • A71블록 : 2016.08.26. ~ 2016.09.04.(10일간) • A72블록 : 2016.08.25. ~ 2016.09.03.(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신청시 SMS 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A70블록 : 2016.08.29.(09:00) • A71블록 : 2016.08.26.(09:00) • A72블록 : 2016.08.25.(09:00) ※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수를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화성시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청약자(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